

의안번호	제 2022 - 21호
보 고 연 월 일	2022. 9. 19. (제119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49차 전체회의	1
1. 일시·방식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검토	2
1. 범죄군의 명칭 검토	2
2. 설정범위 추가 검토	2
3. 유형분류 추가 검토	9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11
5. 다수의견에 따른 양형기준 설정안	44
III.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검토	49
1. 범죄군의 명칭 검토	49
2. 설정범위 추가 검토	50
3. 유형분류 추가 검토	56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58
5. 다수의견에 따른 양형기준 설정안	73
IV. 향후 일정	76

【별첨】

이재신,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 권고 형량범위”

김한울,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 권고 형량범위」 검토 의견”

최형준,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형량 범위 등”

강선주, “정보통신·개인정보 등 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등에 대한 검토 의견”



I. 제149차 전체회의

1. 일시·방식

- 일시: 2022. 9. 5.(월) 15:00 ~ 18:10
- 방식: 비대면 화상회의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1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한울,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이재신,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관세법위반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권고 형량범위 등)
-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권고 형량범위 등)

II. 관세범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검토

1. 범죄군의 명칭 검토

○ 관세범위반범죄 → 관세범죄(견해 일치)

-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 시 '관세범위반범죄'로 명명하였음
- 그러나 범죄의 성격, 처벌규정의 체계 등이 유사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경우 '조세범죄'로 명명한 점, 관세법 제283조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범죄'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함

2. 설정범위 추가 검토

가.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 제외(견해 일치)

(1) 논의 경과

○ 지난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설정대상 포함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2호(관세포탈), 제4항(부정 관세감면), 제5항(부정 관세환급) → 포함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과세가각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관세포탈)는 관세범죄 중 관세포탈 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발생빈도도 높은 편인바(36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같은 조 제4항(부정 관세감면), 같은 조 제5항(부정 관세환급)의 경우 발생빈도는 낮지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법정형이 같고, 범행 수법의 차이일 뿐 관세를 포탈하려는 고의나 결과가 동일하며, 관세수입 확보라는 보호법익에 비추어 동질적인 범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관세포탈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 ➔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8항은 관세법상 관세포탈 범죄에 대하여 포탈 세액 등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집단범·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2) 검토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범죄의 경우, 같은 항 제1호(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관세포탈), 같은 조 제4항(부정 관세감면), 같은 조 제5항(부정 관세환급) 범죄와 그 성격이 유사하고, 위 각 범죄(제1유형)와 법정형이 같음(3년 ↓)
- 그러나 위 각 범죄(제2, 3유형)와 달리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에 관한 대법원판결 등은 없음[다만 제4유형(집단범·상습범)의 가중적 구성요건은 적용됨]

	2000.12.29. 개정	2006. 3. 24. 개정	2010.3.31. 개정	2010. 12. 30. 개정
특가법 제6조 제4항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관세포탈 가중처벌		「관세법」 제270조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관세포탈 가중처벌	
특가법 제6조 제5항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부정수입 가중처벌		「관세법」 제270조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부정수입 가중처벌	
특가법 제6조 제8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000.12.29. 개정	2006. 3. 24. 개정	2010.3.31. 개정	2010. 12. 30. 개정
관세법 제270조 제1항	-1호: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관세포탈 -2호: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1호: (좌동) -1의2호: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2호: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1호: (좌동) -2호: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3호: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부정 수입 가중처벌)에서 정한 기본 구성요건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와 같은 조 제2항(부정 수입)이나, 위 두 기본 구성요건은 범죄의 성격 등이 전혀 다른 점, 조문연혁상 위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는 구 관세법(2010. 12. 30. 개정 전) 제270조 제1항 제2호, 즉 현행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관세포탈 가중처벌)에서 정한 기본 구성요건에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지난 회의 결과, 가격조작(관세법 제270조의2,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의 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 등을 이유로 설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범죄를 설정대상에 포함할 경우,

- ‘유형의 정의’에 별도로 규정을 두어야 하는 등 액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조세범죄, 뇌물범죄 등 다른 범죄군과 그 체계를 달리하게 되고, 나아가 포탈세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적용도 복잡해짐

◎ (예시) 유형의 정의에 별도의 규정을 둘 경우

- 제1유형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은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제1유형에 속한다.
-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또한 관세포탈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감경하는 내용의 서술식 기준을 두더라도, 그에 따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가 적절하지 않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각 유형별, 영역별로 따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그 내용이 복잡해짐

◎ (예시) 서술식 기준을 둘 경우

- ‘관세포탈’ 권고 형량범위 안(다수의견 기준, 제1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2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제2유형의 경우, 2/3로 감경하면 가중영역 상한이 3년4월로 법정형 상한(3년)을 초과함
- 제3유형의 경우, 1/2로 감경하면 기본영역·가중영역 상한이 3년6월, 5년으로 법정형 상한을 초과하고, 1/3로 감경하더라도 가중영역 상한이 3년4월로 법정형 상한을 초과함

- 선고사례가 없는 점(판결문 검색으로도 확인되지 않음),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의 경우 그 구성요건의 내용을 보면 같은 항 제1호(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관세포탈) 범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대유형 또는 중유형으로 분류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나.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 제외(견해 일치)

(1) 논의 경과

- 지난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설정대상 포함

◎ 관세법 제269조 제2항(무신고 수입),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제270조 제2항(부정 수입) ➔ 포함

- 관세법 제269조 제2항(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은 관세범죄 중 통관절차위반 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발생빈도도 높은바(388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제270조 제2항(부정 수입)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20건), 관세법 제269조 제2항과 함께 대표적인 통관절차위반 범죄로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체계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5항(무신고 수입 등 범죄 가중처벌), 제8항(집단범·상습범) ➔ 포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5항, 제8항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 등 범죄에 대하여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을 넘거나 집단범·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 바, 설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2) 검토

-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범죄의 경우, 부정 수입 범죄와 그 성격이 유사하고, 부정 수입 범죄(제1유형)와 법정형이 같음 (3년↓)
-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 수입 범죄(제2, 3유형)와 달리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에 관한 대법원판결 등은 없음[다만 제4유형(집단범·상습범)의 가중적 구성요건은 적용됨]

	2000.12.29. 개정	2006. 3. 24. 개정	2010.3.31. 개정	2010. 12. 30. 개정
특가법 제6조 제5항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부정 수입 가중처벌		「관세법」 제270조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부정 수입 가중처벌	
관세법 제270조 제1항	-1호: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관세포탈 -2호: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1호: (좌동) -1의2호: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2호: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1호: (좌동) -2호: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3호: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부정 수입 가중처벌)에서 정한 기본 구성요건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조문 연혁상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기본 구성요건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는 구 관세법(2010. 12. 30. 개정 전) 제270조 제1항 제2호, 즉 현행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목적적 해석에 따른 적용 견해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른 반대 견해 등 현행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범죄를 설정대상에 포함할 경우,
 - ‘유형의 정의’에 별도로 규정을 두어야 하는 등 액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조세범죄, 뇌물범죄 등 다른 범죄군과 그 체계를 달리하게 되고, 나아가 물품원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적용도 복잡해짐

◎ (예시) 유형의 정의에 별도의 규정을 둘 경우

-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은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제1유형에 속한다.
-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또한 부정 수입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일정보율 감경하는 내용의 서술식 기준을 두더라도, 그에 따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가 적절하지 않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각 유형별, 영역별로 따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그 내용이 복잡해짐

◎ (예시) 서술식 기준을 둘 경우

- ‘부정 수입’ 권고 형량범위안(다수의견 기준, 제1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3	5억 원 이상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6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제2유형의 경우, 2/3로 감경하면 제1유형과 같거나 거의 차이가 없고, 하한만을 2/3로 감경해도 기본영역·가중영역 하한이 제1유형과 같거나 거의 차이가 없음

- 제3유형의 경우, 2/3로 감경하면 기본영역·가중영역 상한이 3년4월, 4년으로 법정형 상한을 초과함

- 선고사례가 없는 점(판결문 검색으로도 확인되지 않음),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의 경우 그 구성요건의 내용을 보면 같은 조 제2항(부정 수입, 즉 조건 미구비 또는 부정 구비 수입)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대유형 또는 중유형으로 분류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할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3. 유형분류 추가 검토

가. 대유형2 무신고 수입 등 ⇨ 견해 일치

- ▣ 각 소유형의 법정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유형 가, 나로 분류

02¹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2억 원 미만				5년↓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년↑
3	5억 원 이상				무, 5년↑
4	집단범·상습범				무, 10년↑

나. 부정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2억 원 미만				3년↓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3	5억 원 이상				3년↑
4	집단범·상습범				무, 10년↑

-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별도 중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 무신고 수입 범죄와 부정 수입 범죄의 경우 제4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형별 법정형 차이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 무신고 수입: 5년↓(제1유형), 3년↑(제2유형), 무, 5년↑(제3유형)
 - 부정 수입: 3년↓(제1유형), 1년↑(제2유형), 3년↑(제3유형)
 - 무신고 수입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감경하는 내용의 서술식 기준을 둘 경우, 그에 따른 부정 수입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가 적절하지 않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각 유형별, 영역별로 따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그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짐

나. 대유형3 무신고 수출 등 ⇨ 견해 일치

- 각 소유형의 법정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유형 가, 나로 분류

03¹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5억 원 미만				3년↓
2	5억 원 이상				1년↑
3	집단범·상습범				무, 10년↑

나. 부정 수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일반 부정 수출				1년↓
2	집단범·상습범				무, 10년↑

-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별도 중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 부정 수출 범죄의 경우, 무신고 수출 범죄와 그 성격이 유사하나, 선고사례가 적은 점,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점,

무신고 수출 범죄(제1유형)에는 포섭되나 법정형(1년↓)이 낮아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점, 무신고 수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감경하는 내용의 서술식 기준을 둘 경우, 그에 따른 부정 수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적절하지 않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각 유형별, 영역 별로 따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그 내용이 복잡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 수입 범죄와 같이 별도 중유형으로 분류 하는 것이 적절함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가. 일반원칙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법정형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고, 죄질이 무거운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며,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나. 관세포탈

(1)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견해 대립

(가) 형량분포1)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2			24
관세법 270조 1항 1호	수	-	2	-	11	-	6	-	9	6	1	-	1	-	-	-	36	8.77
	비율	-	5.5	-	30.5	-	16.6	-	25.0	16.6	2.7	-	2.7	-	-	-	100.0	
관세법 270조 4항	수	-	-	-	-	-	-	-	1	-	-	-	-	-	-	-	1	10.00
	비율	-	-	-	-	-	-	-	100.0	-	-	-	-	-	-	-	100.0	
전체	수	-	2	-	11	-	6	-	10	6	1	-	1	-	-	-	37	8.81
	비율	-	5.4	-	29.7	-	16.2	-	27.0	16.2	2.7	-	2.7	-	-	-	100.0	

- 평균형량은 8.81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4월~18월, 빈도는 6월, 10월, 8월과 12월 등의 순임

(나)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조세포탈(3억 미만)	2년↓	-8월	6월-10월	8월-1년2월
일반 조세포탈(3억~5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	3년↓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다) 제1안(9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 관세포탈 범죄(제1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조세포탈(3억~5억)',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30억~50억)'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관세포탈 범죄(제1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없는 점, 포탈세액 하한의 정함이 없어 포탈세액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1)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석 III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범죄, 관세법위반범죄'(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5년간 선고사건) 참조(이하 같음)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①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하한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과 같이 정하고, ② 기본영역의 상한과 가중영역은 '일반 조세포탈(3억~5억)',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과 같이 정하는 것이 적절함
- 형량분포 통계에서 29.7%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기본영역이 포섭할 수 있어야 함

(라) 제2안(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6월

- 감경 영역의 경우 가벌성의 스펙트럼을 모두 반영하고, 양형실무를 고려하여 하한의 제한을 없애되, 상한은 일반 조세포탈(3억~5억) 반영, 가중 영역의 상한은 일반 조세포탈,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상한을 반영하되, 나머지 기본 영역, 가중 영역의 형량범위는 일부 조정
- 관세포탈 범죄(제1유형)의 법정형(3년↓)을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인 '일반 조세포탈(3억~5억)'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 및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
 - 일반 조세포탈(3억~5억)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관세포탈 범죄 제1유형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과는 구분됨
- 관세포탈 범죄(제1유형)가 포탈세액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은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도 동일

- 또한,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도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데,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50억 이상)이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과 동일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경우 기술상 30억 미만 / 30억~50억 미만 / 50억 이상으로 분류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나누었는데, 본건에서도 5,000만원 이하의 범죄를 세분화해서 권고 형량범위를 나누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한은 50억 이상 유형을, 하한은 3억 미만 유형을 기준으로 비교함이 타당하고, 임의적으로 일부 중간 구간(30억 미만/30억~50억)만을 참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결국 범죄성향이 유사하고 법정형이 동일한 조세포탈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고려하면, 관세포탈 범죄(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의 각 상한은 기본적으로 일반 조세포탈 및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상한을 반영함이 타당
 - 특히 우리나라의 양형이 낮다는 사회적 비판이 늘 있어 왔고, 전반적인 선고형량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과거의 판결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형량분포 및 이전에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참고할 때 위와 같은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1안에 따르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인 일반 조세포탈(3억~5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있는데, 감경 영역의 하한을 제외하고는 일반 조세포탈(3억~5억) 보다 상향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세포탈 범죄는 실제 허위 신고에 따른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관세포탈에 이르러야 하고, 관세포탈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미수로 처벌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 다만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그대로 차용

할 경우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가벌성의 스펙트럼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점,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2)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견해 일치

(가)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10	12	18	24	30	36	42	48	60	72		
특정범죄가중 법 6조 4항 2호	수	-	-	-	-	2	-	-	-	-	-	-	-	2	18.0
	비율	-	-	-	-	100.0	-	-	-	-	-	-	-	100.0	

- 선고건수가 적어 통계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 판결문검색시스템상 2년 2건 정도 추가 확인됨

(나)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조세포탈(5억~10억)	3년 ↑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0억 이상)		2년-4년	3년-6년	5년-7년

(다) 권고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 관세포탈 범죄(제2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5억~10억)',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관세포탈 범죄(제2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포탈세액 하한과 상한의 정함이 있어 영역별 형량구간의 폭을

관세포탈 범죄(제3유형)와 같이 넓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 점, 양형통계상 법정형 하한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2020년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상 형량분포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5억~10억): 18월~24월(총 5건)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 12월~36월(총 61건, 그 중 18월이 24건, 24월이 28건)

- 권고 형량범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5억~10억)',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과 같이 정하는 것이 적절함

(3) 제3유형(2억 원 이상) ⇨ 견해 대립

(가) 형량분포

- 선고사례 없음
- 판결문검색시스템상 2년6월 2건, 3년 4건 정도 확인됨

(나)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조세포탈(10억~200억)	무, 5년↑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특가법 조세포탈(200억 이상)		4년-7년	5년-9년	8년-12년

(다) 제1안(9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2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 관세포탈 범죄(제3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무, 5년↑)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10억~200억/ 200억 이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관세포탈 범죄(제3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포탈세액 상한의 정함이 없어 포탈세액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양형통계상 법정형 하한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2020년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상 형량분포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10억~200억): 24월~48월(11건)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200억 이상): 0건(다만 2016년 30월 1건, 36월 1건)

- ①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10억~200억)'과 같이 정하고, ② 기본영역의 상한과 가중영역은, 가중영역의 하한과 감경영역의 상한이 중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10억~200억)'보다 상향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함

(라) 제2안(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2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2년

- 관세포탈 범죄(제3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무, 5년↑)과 동일한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10억~200억/ 200억 이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조할 때 각 유형의 최대 하한과 최대 상한을 일체로 참조함이 타당
- 연간 10억원 이상인 특가법 조세포탈의 경우 기술상 10억~200억 / 200억 이상으로 분류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나누었는데, 본건에서도 2억 원 이상의 범죄를 세분화해서 권고형량범위를 나누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한은 200억 이상 유형을, 하한은 10억~200억 유형을 기준으로 참조함이 타당
- 제1안에 따르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인 범죄임에도 기본영역의 상한이 법정형 하한보다 2년이 추가된 7년, 가중영역의 최대 상

한이 10년에 불과한데, 이는 법정형과 비교하여 다소 낮음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정범죄가중
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기본영역의 상한이 9년, 가중영역의 상한
이 12년인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상한은 유사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양형이 낮다는 사회적 비판이 늘 있어 왔고,
전반적인 선고형량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과거의
판결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형량분포 및 이전에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참고할 때 위와 같은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제4유형(집단범·상습범) ⇨ 견해 대립

(가) 형량분포

- 선고사례 없음
- 판결문검색시스템상 10년 1건 확인됨(다만 무신고 수입의 집단
범 사안2)

(나)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무, 10년 ↑	4년-7년	5년-8년	7년-11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6년-9년	8년-12년	10년-15년
상습·누범강도		5년-8년	6년-10년	8년-12년
뇌물수수(1억~5억)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뇌물수수(5억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 이상, 무기

(다) 제1안(7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2) 범죄사실[5회 걸쳐 물품원가 합계 약 5억 8,000만 원(범칙시가 약 23억 원) 상당 담배 밀수입],
피고인의 지위(조직원 역할 분담, 자금 관리 및 수익 분배 등 총책)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중영역
에 해당할 만한 사안으로 보임

- 관세포탈 범죄(제4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무, 10년↑) 등을 고려할 때, '뇌물수수', '상습·누범강도' 등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관세포탈 범죄(제4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포탈세액, 수입, 수출 또는 밀수품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피고인의 지위나 실제로 범한 관세범죄의 법정형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³⁾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①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은 '상습·누범강도'와 같이 정하고, ② 가중영역은, 가중영역의 하한과 감경영역의 상한이 중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습·누범강도', '뇌물수수(1억~5억)'보다 상향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함

(라) 제2안(4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집단범·상습범	5년 - 9년	7년 - 12년	10년 - 15년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조할 때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범죄(기본영역 상한 12년, 가중영역 상한 15년), 뇌물수수 범죄(기본영역 최대 상한 12년, 가중영역 최대 상한 무기)를 참조 필요
- 1억원 이상인 뇌물수수의 경우 기술상 1억~5억 / 5억 이상으로 분류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나누는 것이므로 상한은 5억 이상 유형을, 하한은 1억~5억 유형을 기준으로 참조함이 타당

3)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3. 수괴·간부 외 사람: 2년 이상 징역
-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5) 예비적 검토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 유형분류 견해 일치

(가) 검토의 전제

- 앞서 본 바와 같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검토함

(나) 형량분포

- 선고사례 없음(판결문 검색으로도 확인되지 않음)

(다) 권고 형량범위 ⇨ 관세포탈 권고 형량범위에 따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3	2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범죄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형의 정의에 별도로 규정을 두어야 하는바, 그에 따라 제1유형과 제4유형에 한하여 다른 관세포탈 범죄와 같이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이 그나마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예시) 유형의 정의에 별도의 규정을 둘 경우

- 제1유형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은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제1유형에 속한다.

(중략)

- 제4유형 :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유형의 정의를 일부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선고사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유형분류 또는 권고 형량범위를 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관세포탈 범

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감경하는 내용의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바, 포탈세액이 일정 액수(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액수 등) 이상인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하여 그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제1유형의 가중영역이 권고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예시) 특별가중인자

- 포탈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제1유형 중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 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의 경우)

※ 참고(식품·보건범죄 중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 특별가중인자)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다만 위와 같이 유형의 정의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양형인자를 통해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액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다른 범죄군과의 체계 정합성,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적용, 발생빈도와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한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 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됨

다. 무신고 수입 등

(1)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가) 제1유형(2억 원 미만) ⇨ 견해 대립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2	24	36			42
관세법 269조 2항 1호	수	2	14	1	54	1	68	5	76	83	9	2	20	1	-	2	1	1	340	10.01
	비율	0.6	4.1	0.3	15.9	0.3	20.0	1.5	22.4	24.4	2.6	0.6	5.9	0.3	-	0.6	0.3	0.3	100.0	
관세법 269조 2항 2호	수	-	1	-	16	-	6	-	3	17	-	-	3	-	-	2	-	-	48	10.08
	비율	-	2.1	-	33.3	-	12.5	-	6.3	35.4	-	-	6.3	-	-	4.2	-	-	100.0	
전체	수	2	15	1	70	1	74	5	79	100	9	2	23	1	-	4	1	1	388	10.02
	비율	0.52	3.87	0.26	18.04	0.26	19.07	1.29	20.36	25.77	2.32	0.52	5.93	0.26	-	1.03	0.26	0.26	100.0	

○ 평균형량은 10.02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2월~42월, 빈도는 12월, 10월, 8월 등의 순임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5만 리터 미만)	5년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5만~50만 리터)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50만 리터 이상)		8년-1년6월	1년-3년	2년-4년
미등급·사행성게임물 등 유통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6월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등		4월-1년	8월-1년6월	1년-3년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 제1안(9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 무신고 수입 범죄(제1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5년 ↓) 등을 고려할 때,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무신고 수입 범죄(제1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없는 점, 물품원가 하한의 정함이 없어 수입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관세포탈, 무신고 수출 범죄(제1유형, 법정형 3년↓)의 권고 형량범위보다는 중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함

■ 제2안(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4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6월

- 법정형 유사범죄를 참조할 때 각 유형의 최대 하한과 최대 상한을 일체로 참조함이 타당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경우 기술상 5만 리터 미만 / 5만~50만 리터 / 50만 리터 이상으로 분류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나눈 것이므로 상한은 50만 리터 이상 유형을, 하한은 5만 리터 미만 유형을 기준으로 참조함이 타당
- 아울러 같은 관세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도 함께 고려함이 필요하고, 법정형이 3년 이하 관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보다는 상향함이 타당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조세포탈(3억 미만)	2년↓	-8월	6월-10월	8월-1년2월
일반 조세포탈(3억~5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	3년↓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나) 제2유형(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견해 일치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6	8	10	12	18	24	30	36	42	48	60			72
특정범죄가중 법 6조 2항 2호	수	-	-	-	-	2	8	-	2	-	-	-	-	12	25.00
	비율	-	-	-	-	16.7	66.7	-	16.7	-	-	-	-	100.0	

- 평균형량은 25.00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18월~36월, 빈도는 24월, 18월과 36월 등의 순임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조세포탈(5억~10억)	3년 ↑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0억 이상)		2년-4년	3년-6년	5년-7년

■ 권고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 무신고 수입 범죄(제2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5억~10억)’ 등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무신고 수입 범죄(제2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물품원가 하한과 상한의 정함이 있어 영역별 형량구간의 폭을 무신고 수입 범죄(제3유형)와 같이 넓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무신고 수입 범죄(제2유형)와 관세포탈 범죄(제2유형) 모두 선고건수가 많지 않아[각각 12건, 4건(판결문검색 포함)] 양형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유형 모두 법정

형이 3년 이상으로 양형통계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영역의 하한은 유사하게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 점, 양형통계상 법정형 하한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같이 정하는 것이 적절함

- 형량분포
 - 무신고 수입(제2유형): 18월(2건), 24월(8건), 36월(2건)
 - 관세포탈(제2유형): 18월(2건), 24월(2건)
- 관세포탈 범죄(제2유형, 법정형 3년↑)의 권고 형량범위(안)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기본영역(2년 - 4년), 가중영역(3년 - 5년)

(다) 제3유형(5억 원 이상) ⇨ 견해 대립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10	12	18	24	30	36	42	48	60	72		
특정범죄가중법 6조 2항 1호	수	-	-	-	-	-	-	6	2	3	3	1	1	16	40.88
	비율	-	-	-	-	-	-	37.5	12.5	18.8	18.8	6.3	6.3	100.0	

- 평균형량은 40.88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30월~72월, 빈도는 30월, 42월과 48월 등의 순임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조세포탈(10억~200억)	무, 5년↑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특가법 조세포탈(200억 이상)		4년-7년	5년-9년	8년-12년

■ 제1안(9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5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 무신고 수입 범죄(제3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무, 5년↑)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10억~200억/ 200억 이

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무신고 수입 범죄(제3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물품원가 상한의 정함이 없어 수입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무신고 수입 범죄(제3유형)와 관세포탈 범죄(제3유형) 모두 선고건수가 많지 않아[각각 16건, 6건(판결문검색 포함)] 양형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유형 모두 법정형이 무기, 5년 이상으로 양형통계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영역의 하한은 유사하게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 점, 양형통계상 법정형 하한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역시 같이 정하는 것이 적절함

◎ 형량분포

- 무신고 수입(제3유형): 30월(6건), 36월(2건), 42월(3건), 48월(3건), 60월(1건), 72월(1건)
- 관세포탈(제3유형): 30월(2건), 36월(4건)

■ 제2안(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5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2년

- 무신고 수입 범죄(제3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무, 5년↑)과 동일한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10억~200억/ 200억 이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할 때 각 유형의 최대 하한과 최대 상한을 일체로 참조함이 타당
 - 연간 10억원 이상인 특가법 조세포탈의 경우 기술상 10억~200

억 / 200억 이상으로 분류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나누었는데, 본건에서도 5억 원 이상의 범죄를 세분화해서 권고 형량범위를 나누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한은 200억 이상 유형을, 하한은 10억~200억 유형을 기준으로 참조함이 타당

- 제1안에 따르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인 범죄임에도 기본영역의 상한이 법정형 하한보다 2년이 추가된 7년, 가중영역의 최대 상한이 10년에 불과한데, 이는 법정형과 비교하여 다소 낮음
- 법정형이 동일하고 및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정범죄가 중범상 조세포탈의 경우 기본영역의 상한이 9년, 가중영역의 상한이 12년인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상한은 유사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양형이 낮다는 사회적 비판이 늘 있어 왔고, 전반적인 선고형량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과거의 판결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형량분포 및 이전에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참고할 때 위와 같은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밀수입 등 범죄의 특수성도 고려 필요함. 통상 서류상 문제 없는 경우 수입화물 통관 절차에서 엑스레이 검사 내지 무작위 개장검사를 하게 될 경우 비용이 다수 지출되고 통관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비율 자체가 매우 낮음. 애초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밀수입 범행을 하더라도 적발될 확률이 매우 낮음. 그래서 한 번 걸려서 처벌받더라도 적발되지 않은 10번의 밀수입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처벌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밀수입꾼들은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밀수입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영리성·반복성). 한편, 밀수입 범행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범죄 책임을 회피하

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수입업체(한 번 적발된 업체는 추후 지정검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음) 및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밀수품 반출·운반 및 구매자 알선 등 일련의 범행에 필요한 보세창고 관련자, 운반책 및 판매알선책 등을 물색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등 밀수입을 위한 집단을 구성하여 밀수입 범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집단성)

-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밀수입 범행을 적발하기 어려울뿐더러, 적발되더라도 공범들끼리의 진술 담합으로 주범이 은폐되고 바지사장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고, 설사 주범이 확인되더라도 수많은 밀수입 범행 중 적발된 해당 건 1건으로 처벌받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밀수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적발된 밀수입업자 등의 경우 법정형 내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다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줄이는 것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

(라) 제4유형(집단범·상습범) ⇨ 견해 대립

☞ 4. 나. (4)에서의 논의와 동일함(제1안: 7인, 제2안: 4인)

(2) 부정 수입

(가) 제1유형(2억 원 미만) ⇨ 견해 대립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2		
관세법 270조 2항	수	-	2	-	7	-	5	-	3	3	-	-	-	-	-	20	7.80
	비율	-	10.0	-	35.0	-	25.0	-	15.0	15.0	-	-	-	-	-	100.0	

- 평균형량은 7.80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4월~12월, 빈도는 6월, 8월, 10월과 12월 등

의 수입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조세포탈(3억 미만)	2년 ↓	-8월	6월-10월	8월-1년2월
일반 조세포탈(3억~5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	3년 ↓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 제1안(9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 부정 수입 범죄(제1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조세포탈(3억~5억)’,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30억~50억)’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부정 수입 범죄(제1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없는 점, 물품원가 하한의 정함이 없어 수입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부정 수입 범죄(제1유형)의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보면, 관세포탈 범죄(제1유형), 무신고 수출 범죄(제1유형)의 그것과 대동소이하고, 세 유형 모두 법정형이 3년 이하로서 영역별 형량구간의 폭이 넓지 않은바, 세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같이 정하는 것이 적절함

◎ 형량분포

- 부정 수입(제1유형) 평균: 7.80월, 분포: 6월, 8월, 10월과 12월 순, 범위:

4월~12월

- 관세포탈(제1유형) 평균: 8.81월, 분포: 6월, 10월, 8월과 12월 순, 범위: 4월~18월

- 무신고 수출(제1유형) 평균: 8.70월, 분포: 6월, 8월, 4월과 12월 순, 범위: 4월~22월

■ 제2안(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6월

- 감경 영역의 경우 가별성의 스펙트럼을 모두 반영하고, 양형실무를 고려하여 하한의 제한을 없애되, 상한은 일반 조세포탈(3억~5억) 반영
- 가중 영역의 상한은 일반 조세포탈,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상한을 반영하되, 나머지 기본 영역, 가중 영역의 형량범위는 일부 조정
- 부정 수입 범죄(제1유형)의 법정형(3년 ↓)을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인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 '일반 조세포탈(3억~5억)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
 - 일반 조세포탈(3억~5억)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부정 수입 범죄 제1유형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과는 구분됨
- 또한,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도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데,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50억 이상)이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과 동일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경우 기술상 30억 미만 / 30억~50억 미만/ 50억 이상으로 분류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나누었는데, 본건에서도 5,000만원 이하의 범죄를 세분화해서 권고 형량범위를 나누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한은 50억 이상 유형을, 하한은 30억 미만 유형을 기준으로 참조함이 타당하고, 임의적으로 일부 중간 구간(30억 미만/30억~50억)만을 참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결국 범죄성향이 유사하고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고려하면, 권고 형량범위의 각 상한은 기본적으로 일반 조세포탈 및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상한을 반영함이 타당
- 특히 우리나라의 양형이 낮다는 사회적 비판이 늘 있어 왔고, 전반적인 선고형량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과거의 판결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형량분포 및 이전에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참고할 때 위와 같은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1안에 따르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인 일반 조세포탈(3억~5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있는데, 감경 영역의 하한을 제외하고는 일반 조세포탈(3억~5억) 보다 상향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그대로 차용할 경우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가벌성의 스펙트럼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점,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나) 제2유형(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견해 일치

■ 형량분포

- 선고사례 없음
- 판결문검색시스템상 6월 1건, 12월 1건 정도 확인됨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1년 ↑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수표 위조·변조		6월-1년	10월-2년	1년-4년
19세 이상 대상 대가수수 등 성매매 강요 등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 권고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부정 수입 범죄(제2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1년 ↑)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등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부정 수입 범죄(제2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물품원가 하한과 상한의 정함이 있어 영역별 형량구간의 폭을 부정 수입 범죄(제3유형)와 같이 넓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 점, 양형통계상 법정형 하한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상 형량분포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6월~24월(총 42건, 그중 18월이 1건, 24월이 2건)

- ① 감경영역·가중영역의 하한과 기본영역의 상한은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과 같이 정하고,
- ② 감경영역·가중영역의 상한과 기본영역의 하한은, 가중영역

의 하한과 감경영역의 상한이 중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기본영역에 정상참작감경을 한 형량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50억)'과 '수표 위조·변조'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함

(다) 제3유형(5억 원 이상) ⇨ 견해 일치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10	12	18	24	30	36	42	48	60	72		
특정범죄가중법 6조 5항 1호	수	-	-	-	-	-	1	-	-	-	-	-	-	1	24.00
	비율	-	-	-	-	-	100.0	-	-	-	-	-	-	100.0	

○ 선고건수가 적어 통계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조세포탈(5억~10억)	3년 ↑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0억 이상)		2년-4년	3년-6년	5년-7년

■ 권고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5억 원 이상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6년

○ 부정 수입 범죄(제3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5억~10억)',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300억/ 300억 이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부정 수입 범죄(제3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물품원가 상한의 정함이 없어 수입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① 부정 수입 범죄(제3유형), 관세포탈 범죄(제2유형) 및 무신고 수입 범죄(제2유형) 모두 선고건수가 많지 않아[각각 1건, 4건 (판결문검색 포함), 12건] 양형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 유형 모두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양형통계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영역의 하한은 유사하게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바, 부정 수입 범죄(제3유형)의 감경영역·기본 영역과 가중영역의 하한은 나머지 두 유형의 그것과 같이 정하되, ② 부정 수입 범죄(제3유형)의 경우, 나머지 두 유형의 경우와 달리 물품원가 상한의 정함이 없어 영역별 형량구간의 폭을 다소 넓게 할 필요가 있는바, 가중영역의 하한과 감경영역의 상한이 중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은 나머지 두 유형의 그것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형량분포

- 부정 수입(제3유형): 24월(1건)
- 관세포탈(제2유형): 18월(2건), 24월(2건)
- 무신고 수입(제2유형): 18월(2건), 24월(8건), 36월(2건)

(라) 제4유형(집단범·상습범) ⇨ 견해 대립

☞ 4. 나. (4)에서의 논의와 동일함(제1안: 7인, 제2안: 4인)

(3) 예비적 검토-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 유형분류 견해 일치

(가) 검토의 전제

-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검토함

(나) 형량분포

- 선고사례 없음

(다) 권고 형량범위 ⇨ 부정수입 권고 형량범위에 따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5억 원 이상			
4	집단범·상습범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형의 정의에 별도로 규정을 두어야 하는바, 그에 따라 제1유형과 제4유형에 한하여 부정 수입 범죄와 같이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이 그나마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예시) 유형의 정의에 별도의 규정을 둘 경우

-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은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제1유형에 속한다.
- (중략)
-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유형의 정의를 일부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선고사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유형분류 또는 권고 형량범위를 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 수입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감경하는 내용의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바, 물품원가가 일정 액수(특정범죄가중범상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액수 등) 이상인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하여 그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제1유형의 가중영역이 권고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적절할 것

으로 보임

◎ (예시) 특별가증인자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제1유형 중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의 경우)

※ 참고(식품·보건범죄 중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 특별가증인자)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다만 위와 같이 유형의 정의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양형인자를 통해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액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다른 범죄군과의 체계 정합성,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적용, 발생빈도와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한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 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됨

라. 무신고 수출 등

(1)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가) 제1유형(5억 원 미만) ⇨ 견해 대립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2		
관세법 269조 3항 1호	수	-	6	-	10	-	6	-	2	3	-	-	1	-	-	28	7.36
	비율	-	21.4	-	35.7	-	21.4	-	7.1	10.7	-	-	3.6	-	-	100.0	
관세법 269조 3항 2호	수	-	2	-	4	-	3	-	2	5	-	-	3	-	1	20	10.60
	비율	-	10.0	-	20.0	-	15.0	-	10.0	25.0	-	-	15.0	-	5.0	100.0	
전체	수		8		14		9		4	8			4		1	48	8.70
	비율		16.67		29.17		18.75		8.33	16.67			8.33		2.08	100.0	

- 평균형량은 8.70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4월~22월, 빈도는 6월, 8월, 4월과 12월 등의 순임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조세포탈(3억 미만)	2년 ↓	-8월	6월-10월	8월-1년2월
일반 조세포탈(3억~5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	3년 ↓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50억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 제1안(9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 무신고 수출 범죄(제1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조세포탈(3억~5억)’,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30억~50억)’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무신고 수출 범죄(제1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없는 점, 물품원가 하한의 정함이 없어 수출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무신고 수출 범죄(제1유형)의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보면, 관세포탈 범죄(제1유형), 부정 수입 범죄(제1유형)의 그것과 대동소이하고, 세 유형 모두 법정형이 3년 이하로서 영역별 형량구간의 폭이 넓지 않은바, 세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같이 정하는 것이 적절함

◎ 형량분포

- 무신고 수출(제1유형) 평균: 8.70월, 분포: 6월, 8월, 4월과 12월 순, 범위: 4월~22월

- 관세포탈(제1유형) 평균: 8.81월, 분포: 6월, 10월, 8월과 12월 순, 범위: 4월~18월
- 부정 수입(제1유형) 평균: 7.80월, 분포: 6월, 8월, 10월과 12월 순, 범위: 4월~12월

■ 제2안(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6월

- 무신고 수출 범죄(제1유형)의 법정형(3년↓)을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인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 ‘일반 조세포탈(3억~5억)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
 - 일반 조세포탈(3억~5억)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부정 수입 범죄 제1유형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과는 구분됨
- 또한,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도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데,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50억 이상)이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과 동일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경우 기술상 30억 미만 / 30억~50억 미만 / 50억 이상으로 분류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나누었는데, 본건에서도 5,000만원 이하의 범죄를 세분화해서 권고 형량범위를 나누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한은 50억 이상 유형을, 하한은 30억 미만 유형을 기준으로 참조함이 타당하고, 임의적으로 일부 중간 구간(30억 미만/30억~50억)만을 참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결국 범죄성향이 유사하고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면, 권고 형량범위의 각 상한은 기본적으로 일반 조세포탈 및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상한을 반영함이 타당

- 특히 우리나라의 양형이 낮다는 사회적 비판이 늘 있어 왔고, 전반적인 선고형량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과거의 판결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형량분포 및 이전에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참고할 때 위와 같은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1안에 따르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인 일반 조세포탈(3억~5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있는데, 감경 영역의 하한을 제외하고는 일반 조세포탈(3억~5억) 보다 상향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그대로 차용할 경우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가벌성의 스펙트럼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점,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나) 제2유형(5억 원 이상) ⇨ 견해 일치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10	12	18	24	30	36	42	48	60			72
특정범죄가중법 6조 3항	수	1	9	4	6	-	4	-	-	-	-	-	-	24	11.92
	비율	4.2	37.5	16.7	25.0	-	16.7	-	-	-	-	-	-	100.0	

- 평균형량은 11.92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6월~24월, 빈도는 8월, 12월, 10월과 24월 등의 순임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특가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1년 ↑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수표 위조·변조		6월-1년	10월-2년	1년-4년
19세 이상 대상 대가수수 등 성매매 강요 등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 권고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5억 원 이상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5년

-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1년 ↑) 등을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50억)' 등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있는 점, 물품원가 상한의 정함이 없어 수출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등에 따른 가벌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①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와 부정 수입 범죄(제2유형) 모두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양형통계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영역의 하한은 유사하게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바,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의 감경영역·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하한은 부정 수입 범죄(제2유형)의 그것과 같이 정하되, ②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의 경우 부정 수입 범죄(제2유형)의 경우와 달리 물품원가 상한의 정함이 없어 가중영역 형량구간의 폭을 다소 넓게 할 필요가 있는바, 무신고 수출 범죄(제2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은 부정 수입 범죄(제2유형)의 그것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형량분포**

- 무신고 수출(제2유형): 6월(1건), 8월(9건), 10월(4건), 12월(6건), 24월(4건)
- 부정 수입(제2유형): 6월(1건), 12월(1건)

(다) 제3유형(집단범 · 상습범) ⇨ **견해 대립**

☞ 4. 나. (4)에서의 논의와 동일함(제1안: 7인, 제2안: 4인)

(2) **부정 수출**

(가) 제1유형(일반 부정 수출) ⇨ **견해 일치**

■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2			24
관세법 270조 3항	수	-	1	-	1	-	-	-	-	-	-	-	-	-	-	-	2	5.00
	비율	-	50.0	-	50.0	-	-	-	-	-	-	-	-	-	-	-	100.0	

○ 선고건수가 적어 통계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도주	1년↓	-6월	4월-8월	6월-1년
일반 모욕		-4월	2월-8월	4월-1년

■ **권고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부정 수출	- 6월	4월 - 8월	6월 - 1년

○ 일반 부정 수출(제1유형)의 성격이나 법정형(1년↓),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등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나) 제2유형(집단범 · 상습범) ⇨ **견해 대립**

☞ 4. 나. (4)에서의 논의와 동일함(제1안: 7인, 제2안: 4인)

마. 밀수품 취득 등

(1) 제1유형(일반 밀수품 취득 등) ⇨ 견해 대립

(가) 형량분포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2		
관세법 274조 1항 1호	수	-	6	-	9	-	1	-	-	2	-	-	1	-	-	19	6.74
	비율	-	31.6	-	47.4	-	5.3	-	-	10.5	-	-	5.3	-	-	100.0	

- 평균형량은 6.74월임
- 형량분포의 범위는 4월~18월, 빈도는 6월, 4월, 12월 등의 순임

(나) 법정형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 장물범죄 등

구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7년 ↓	4월-10월	6월-1년6월	1년-3년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7년 ↓, 2년 ↑	1년-2년	1년6월-3년	2년-4년
일반절도	6년 ↓	4월-10월	6월-1년6월	10월-2년
대인절도	6년 ↓	6월-1년	8월-2년	1년-3년

(다) 제1안(9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 일반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 ↓) 등을 고려할 때, '장물범죄'와 본범인 '절도범죄' 등의 법정형과 권고 형량범위의 관계 등을 참조하는 한편, 일반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본범인 무신고 수입, 부정 수입, 무신고 수출 등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함
- 일반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의 정함이 없는 점, 밀수품의 규모, 가담 및 이득의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따른

가별성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본범인 무신고 수입 등 범죄의 법정형이나 양형통계와 비교할 때 그 법정형이나 양형통계가 높은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평균형량과 형량분포의 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① 감경영역·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하한은 법정형(3년↓)이 같은 부정 수입(제1유형, 2억 미만) 등과 같이 정하고, ② 가중영역의 상한은 부정 수입(제1유형, 2억 미만) 등과 무신고 수입(제1유형, 5억 미만)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함

(라) 제2안(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6월

- 일반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성격이나 법정형(3년↓)을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인 ‘일반 조세포탈(5억 이상)’, ‘일반 조세포탈(3억~5억)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
- 실무상 밀수입 범행이 밀수입품의 판매처를 확보한 다음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밀수입 범행의 공범적 성격이 있는 점(다만 밀수입 범행 공모의 직접적 증거는 없는 경우)도 고려 필요

(2)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 견해 대립

☞ 4. 나. (4)에서의 논의와 동일함(제1안: 7인, 제2안: 4인)

5. 다수의견에 따른 양형기준 설정안

가. 권고 형량범위

01¹ 관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5,000만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3년↓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년↑
3	2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무, 5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무, 10년↑

02¹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2억 원 미만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5년↓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년↑
3	5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무, 5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무, 10년↑

나. 부정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2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3년↓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1년↑
3	5억 원 이상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6년	3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무, 10년↑

03¹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5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3년↓
2	5억 원 이상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5년	1년↑
3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무, 10년↑

나. 부정 수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일반 부정 수출	- 6월	4월 - 8월	6월 - 1년	1년↓
2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무, 10년↑

04¹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3년↓
2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무, 10년↑

나. 유형의 정의

01¹ 관세포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면탈	관세법 제270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정 관세환급	관세법 제270조 제5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3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가. 제1유형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병과 가능)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3년 이상 징역, 물품원가의 2배 벌금 병과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물품원가의 2배 벌금 병과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 수입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부정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1년 이상 징역, 물품원가 벌금 병과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3년 이상 징역, 물품원가 벌금 병과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병과 가능)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3¹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무신고 수출·반송/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병과 가능)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1년 이상 징역, 물품원가 벌금 병과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1) 제1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출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 수출

(1) 제1유형(일반 부정 수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부정 수출	관세법 제270조 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2)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04¹ 밀수품 취득 등

가. 제1유형(일반 밀수품 취득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밀수출입품(관세법 제269조) 또는 부정 수출입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관세법 제27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병과 가능)

나.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4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4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Ⅲ.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검토

1. 범죄군의 명칭 검토 ⇨ 견해 대립

가. 제1안(8인)

- 범죄군 명칭: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 대유형 명칭: 대유형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대유형 02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⁴⁾
- 침해 행위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대표적인 범죄로 집약된 법률용어에 기초하며 명료함
- 가장 대표적인 범죄로 집약 → 가독성 ↑
- ‘프라이버시’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려는 범죄가 보호하려는 개인 정보, 신용정보 등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양형기준과 범죄군의 명칭이 서로 부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음

나. 제2안(3인)

- 범죄군 명칭: 정보통신망·프라이버시 범죄
- 대유형 명칭: 대유형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대유형 02 프라이버시 침해범죄⁵⁾
- ‘프라이버시’ 용어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통신비밀을 전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언론, 사회, 정부, 국민 사이에서 널리 통용
- ‘프라이버시권’ 용어는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다수 쓰임
-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개인의 사적정보에 부당하게 접근하는 행위 금지 →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4)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를 설정 범위에 포함할 경우 대유형3으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추가

5)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를 설정 범위에 포함할 경우 대유형2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추가

결정권 보장(2005년 헌법재판소⁶⁾가 독자 기본권 인정⁷⁾ →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게임물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일상용어에 기초한 범죄군 명칭 존재

2. 설정범위 추가 검토

가. 위치정보법 제39조 제4호 추가 설정 ⇨ 견해 일치

(1) 관련 조문

제39조(벌칙)		
1호 (-)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5년 ↓ 5,000만 원 ↓
2호 (-)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3호 (-)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4호 (-)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5호 (-)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등 종사자 등이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	
6호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	

■ 제39조 제2호, 제3호는 지난 회의에서 설정범위 포함

■ 제39조 제4호 설정범위 포함 필요성

- 제39조 제2호, 제3호(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위치정보 누설·무단 수집 등)설정범위 포함 → 구성요건 유사한 제39조 제4호를 설

6)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7) 이인호,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2009. 6.), 사법연구지원재단

정범위에서 제외할 이유 없음

- 선고사례 없지만, 제39조 제2호, 제3호와 법정형이 동일하여 규범적 형량범위 설정 가능

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 견해 대립

정보통신망법 제72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유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 제1안(제외): 6인

- 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재화를 할인 매입하여 자금 유통
- 건전한 금융질서의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 보호법익 이질적
- 다른 법률에 유사범죄 처벌 규정이 있어 추후에 그 범죄와 함께 설정여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 등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통하여 주거나 이를 알선 등 (3년↓)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각호, 제95조의2 제2호, 제3호: 자금을 제공·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도록 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 등 (3년↓)

- 본 조항은 2007. 12. 21. 개정 시 도입된 규정으로 개정이유⁸⁾는 다음과 같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사의 규정으로 취급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2007. 4.)

최근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아이템 구매 등을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받는 행위(소위 '휴대폰깡')으로 인하여 청소년 및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피해가 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유사한 입법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소위 신용카드로 재화 및 서비스의 대가를 결제하게 하고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소위 '신용카드깡')를 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참조하여 소위 휴대폰깡을 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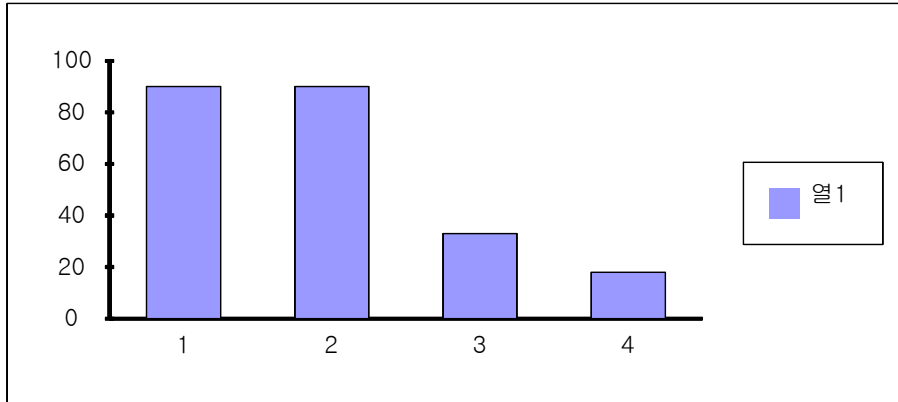
-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라는 특수성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음 → 불법 자금융통범죄로 취급

순번	사건번호	형량(월)	양형 이유
1	서울동부 2018고단629	4	사적 금융으로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제한 벗어난 것
2	의정부 2020고단4665	18/4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들에 대한 불법 자금융통
3	인천 2020고단4759	10/4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들에 대한 불법 자금융통
4	인천 2020고단8835	10/8/6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들에 대한 불법 자금융통
5	수원 2019고단5385	12	불법 자금융통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과 有
6	수원 2019고단8286	18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들에 대한 불법 자금융통
7	수원 2020고단5370	12/6	사적 금융으로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제한 벗어난 것
8	안산 2021고단3135	24	소액결제 악용하여 경제질서 교란
9	대전 2020고단4498	24/8	사적 금융으로 금융질서 어지럽히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 피해
10	부산 2019고단4679	10	사적 금융으로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제한 벗어난 것
11	목포 2020고단991	18/12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들에 대한 불법 자금융통

(2) 제2안(포함): 5인

-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양형자료조사(17. 1. 1.~21. 12. 31.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 272건) 대상 중 3번째로 선고건수가 많은 33건으로, 발생빈도가 높아 양형기준의 설정 필요성이 큼

○ 실행 분포도 양형자료조사 대상사건 중 3번째로 3명



※ 신고건수 통계

1.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90명
2.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 90명
3.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 33명
4.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 18명

○ 제1안과 같이 유사 행위를 규제하는 다른 법률위반과 함께 설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나,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유사 범죄유형들을 분류하여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별도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견해 대립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1) 제1안(제외): 7인

-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 보호법익 이질적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구성요건이 유사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구성요건 대부분 포섭(반의사불벌죄라는 점도 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 2021. 10. 21. 시행
-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안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사례 多(2022. 7. 1.부터 2022. 8. 18.까지 징역형 단일범 처벌 사례)

순번	사건번호	형량(월)	범죄사실
1	제주 2022고단1142	8	불안감, 공포심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40회 전송
2	대구서부 2022고단896	10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3	영동 2022고단84	4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4	속초 2022고단34	10	수십 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연락
5	부산 2022고단1991	8	카카오톡으로 위협적인 말, 과도 사진 전송
6	의성 2022고단105	6	수십 회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전송
7	부산 2022고단1382	4	휴대전화로 수십 회 음향 송신

8	대구서부 2022고단848	8	휴대전화로 욕설 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9	의정부 2022고단628	8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수 회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10	수원 2022고단1770	8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회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를 이번 설정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추후 스토킹 범죄 설정 시 이를 스토킹 범죄로 옮기는 것은 부담
- 법정형이 1년 이하라는 제약이 있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하여 너무 약한 형을 권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2) 제2안(포함): 4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양형자료조사 대상(17. 1. 1.~21. 12. 31.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 272건) 중 최다 선고 건수인 90건
- 실형 분포도 제74조 제1항 제3호가 20명으로 최다
- 스토킹처벌법 등 유사 행위 규제 다른 법률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우선 위 조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둔 후 차후 동일 유형들이 포함된 법률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시 재조합 하는 것이 양형기준 공백의 최소화 방안임

3. 유형분류 추가 검토

가. 위치정보법 제39조 제4호 ⇨ 견해 일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위치 정보법	제39조	2호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5년↓
		3호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4호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제40조	4호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	3년↓	

- 위치정보법 제39조 제4호는 대유형 2의 소유형 2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법정형 징역 5년 이하로 동일, 행위태양 유사)

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견해 일치

- 대유형 2의 소유형 3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 다음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사이에 통계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8	10	12	14	16	18	24	30			36
개인정보보호 법 70조 2호	수	-	2	-	5	4	3	2	1	1	2	1	1	1	23	12.17
	비율	-	8.7	-	21.7	17.4	13.0	8.7	4.3	4.3	8.7	4.3	4.3	4.3	100.0	
신용정보법 50조 1항	수	-	1	-	1	-	-	-	-	-	-	-	-	-	2	5.00
	비율	-	50.0	-	50.0	-	-	-	-	-	-	-	-	-	100.0	
통신비밀보호 법 16조 1항 1호	수	-	-	-	77	25	11	12	-	-	1	1	-	-	127	7.54
	비율	-	-	-	60.6	19.7	8.7	9.4	-	-	0.8	0.8	-	-	100.0	
통신비밀보호 법 16조 1항 2호	수	-	-	-	18	2	1	5	-	-	2	-	-	-	28	8.21
	비율	-	-	-	64.3	7.1	3.6	17.9	-	-	7.1	-	-	-	100.0	

-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의 평균형량(제16조 제1항 제1호: 7.54

월, 2호: 8.21월)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평균형량 (12.17월)

-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법정형의 하한이 있지만, 같은 소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와 법정형 상한이 동일하고, 행위 유형이 유사
- 법정형 10년 이하와 1년 이상 10년 이하가 같은 유형에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구체적인 유형의 내용은 별지와 같음)
 - 위증·증거인멸 범죄, 대유형 1 위증, 소유형 2 모해위증
 - 절도범죄, 대유형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손괴범죄, 대유형 1 일반적 기준, 소유형 2 공익건조물파괴

다. 예비적 검토: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견해 일치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와 범죄의 성질 전혀 다름 ⇨ 대유형 별도 분류 필요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사이 법정형 차이 有 ⇨ 소유형 별도 분류 필요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1년 이하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3년 이하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1) 제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 견해 대립

유형	명칭	해당법조	법정형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 10, 11호	5년 이하

(가) 선고 형량9)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10호	수	-	-	-	-	3	-	1	-	-	-	-	-	-	4	7.00
	비율	-	-	-	-	75.0	-	25.0	-	-	-	-	-	-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11호	수	-	-	-	-	3	2	2	2	-	-	-	1	-	10	9.60
	비율	-	-	-	-	30.0	20.0	20.0	20.0	-	-	-	10.0	-	100.0	
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9호	수	1	-	12	-	45	8	10	9	1	-	1	-	3	90	7.71
	비율	1.1	-	13.3	-	50.0	8.9	11.1	10.0	1.1	-	1.1	-	3.3	100.0	
소계	수	1	-	12	-	51	10	13	11	1	-	1	1	3	104	7.87
	비율	1.0	-	11.5	-	49.0	9.6	12.5	10.6	1.0	-	1.0	1.0	2.9	100.0	

(나) 제1안(6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 ▣ 법정형 동일 유사 범죄 권고 형량 고려
- 업무방해(위계/위력/컴퓨터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방해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9)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 대상,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이하 동일

- 권리행사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 선고 형량 분포의 고려

- 기본영역에 전체 선고사례의 84.6% 포섭
- 최빈값(6월) 기본영역 내 포섭

■ 기본영역의 설정

- 본 유형은 업무방해와 법정형 동일, 컴퓨터업무방해¹⁰⁾와 구성요건 유사
- 업무방해의 기본영역(6월 - 1년6월)과 동일하게 설정

■ 감경영역도 업무방해와 동일하게 설정

■ 가중영역 상한을 업무방해보다 다소 낮게(3년) 설정

- 양형통계상 최고형량이 징역 2년임
- 업무방해 양형기준 설정 당시 다음과 같이 위계, 위력(컴퓨터는 아님)에 관한 죄질 불량 사안 엄벌 필요에 따라 규범적으로 형량범위를 상향함¹¹⁾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위력 업무방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위계 업무방해(입시부정, 비자발급)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큰 행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반영해 실제 형량분포보다 규범적으로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

- 업무방해에 관한 통계분석¹²⁾에 의하면, 위계, 위력에 의한 범행보다 컴퓨터업무방해의 평균형량이 낮음

10)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11)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2014. 8. 27. 전문위원 회의 자료) 5쪽 참조

12)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결과(2014. 4. 30.)

단위: 명

조사내용	구분	수	평균(월)	표준편차	F 또는 T	p-value
범행방법	허위 사실 유포	4	6.50	2.52	2.317	0.058
	기타 위계	39	7.67	2.45		
	위력	198	6.30	2.61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2	6.00	0.00		
	기타	4	6.50	1.00		

* p<0.05, ** p<0.01, *** p<0.001

- ▣ 법정형이 더 높은 범죄(징역 7년↓)의 형량범위 참작
- 아래 형량범위와 비교하면, 위와 같은 형량범위 설정 낮지 않음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¹³⁾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다) 제2안(5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법정형이 동일하고 구성요건의 유사성이 업무방해의 권고형을 참고함은 타당함
- 제1안은 가중영역의 경우 업무방해의 권고형 설정 당시 논의를 참고하여 업무방해보다 다소 하향(1년-3년6월을 1년-3년으로)한 다는 취지이나, 2014년 논의 당시의 통계자료나 규범적 요구가 현재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오히려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면,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보다 그 엄벌의 필요성

13)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낮다고 할 수 없고, 법정형의 상한(5년)을 고려할 때, 가중구간의 상한을 3년 6월로 함이 상당

(2) 제2유형(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견해 대립

유형	명칭	해당법조	법정형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7년 이하

(가) 선고 형량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정보통신망법 70조의2	수	-	-	1	1	6	2	3	4	-	-	-	1	-	18	8.72	
	비율	-	-	5.6	5.6	33.3	11.1	16.7	22.2	-	-	-	5.6	-	100.0		

(나) 제1안(6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4월 - 1년	6월 - 2년	1년2월 - 3년6월

- ▣ 법정형 동일 범죄 권고 형량 고려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 명예훼손범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8월	6월 - 1년4월	8월 - 2년6월

※ 법정형 3년 이하(형법 제309조 제2항) 병존

※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7년↓) 위반 범죄로 본 유형(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의 바로 앞에 위치한 조문임

■ 선고 형량 분포의 고려

- 기본영역에 전체 선고사례의 88.8% 포섭
- 최빈값(6월) 기본영역 내 포섭

■ 1-1유형(대유형1의 소유형1) 기본영역(6월-1년6월) 고려

- 법정형 차이에 비추어 1-1유형 기본영역보다 높게 설정해야
- 최빈값이 6월임을 고려하여 하한은 6월로 유지

■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은 기본영역과 중첩범위 고려하여 정하되,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통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 고려하여 가중 영역의 상한 규범적 상향

(다) 제2안(5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4월 - 1년	6월 - 2년6월	1년6월 - 4년

- 악성프로그램 유포는 국민 개개인 뿐 아니라, 국가 정보통신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갈수록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반드시 엄벌이 필요한 범죄의 하나임
- 현재 분석된 형량 분포는 최소 4월, 최대 18개월(1년 6월)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 상한(7년)을 고려해 볼 때 규범적으로 전체적인 선고형의 상향 필요성이 있는 바, 선고 형량 분포 고려 요소 및 중첩 구간 관련 큰 문제가 없도록 일부 상향

나.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1) 제1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등) ⇨ 견해 대립

유형	명칭	해당법조	법정형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3년 이하

(가) 선고 형량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8	10	12	14	16	18	24	30	36		
개인정보보호법 72조 2호	수	-	1	1	2	2	3	1	-	-	1	-	-	-	11	8.82
	비율	-	9.1	9.1	18.2	18.2	27.3	9.1	-	-	9.1	-	-	-	100.0	
위치정보법 40조 4호	수	-	6	-	9	4	2	1	-	-	-	-	-	22	6.45	
	비율	-	27.3	-	40.9	18.2	9.1	4.5	-	-	-	-	-	100.0		

(나) 제1안(9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 법정형 동일 범죄 권고 형량 고려

- 도주·범인은닉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범인은닉·도피	- 6월	4월 - 1년	8월 - 2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범행	- 6월	4월 - 10월	6월 - 1년2월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 목적 범행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 선고 형량 분포의 고려

- 기본영역에 전체 선고사례의 약 90% 포섭
- 최빈값(6월) 기본영역 내 포섭

■ 기본영역의 설정

- 법정형 차이에 비추어 1-1유형 기본영역(6월-1년6월)보다 낮게 설정해야
- 다양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 신축성 있는 양형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 폭(8월)을 다소 넓게 설정

■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은 기본영역과 중첩범위 고려하여 정함

■ 형을 가중하도록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는 누범, 상습범 등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서술식 규정을 두기도 하나, 범행동기나 영리목적 등의 경우를 양형기준에서 서술식 기준으로 가중한 사례는 없음. 서술식 기준보다는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 제2안(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6월	4월 -1년	8월 - 2년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 가중

- 법정형이 동일한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 목적의 범행의 경우 별도 유형으로 가중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부정취득 등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이용 목적의 범행

을 위한 경우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 (※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의 채무 정보,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다수)

- 별도 유형 구별까지는 하기 어려워도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제1안을 기본으로 하되, 조직적·범죄이용 목적의 경우 서술식으로 형량 가중 기준 마련

(2) 제2유형(개인정보 무단 이용 등) ⇨ 견해 대립

유형	명칭	해당법조	법정형
2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 2, 3, 4, 5, 6호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 5, 6, 7, 8호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 3, 4호	5년 이하

(가) 선고 형량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8	10	12	14	16	18	24	30			36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	수	1	6	-	5	4	1	1	-	-	1	-	-	-	19	6.79
	비율	5.3	31.6	-	26.3	21.1	5.3	5.3	-	-	5.3	-	-	-	100.0	
개인정보보호법 71조 2호	수	-	1	-	6	1	1	-	-	-	-	-	-	-	9	6.44
	비율	-	11.1	-	66.7	11.1	11.1	-	-	-	-	-	-	-	100.0	
개인정보보호법 71조 3호	수	-	-	-	1	-	-	-	-	-	-	-	-	-	1	6.00
	비율	-	-	-	100	-	-	-	-	-	-	-	-	-	100.0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	수	-	1	-	4	3	1	3	-	-	-	-	-	-	12	8.17
	비율	-	8.3	-	33.3	25.0	8.3	25.0	-	-	-	-	-	-	100.0	
개인정보보호법 71조 6호	수	-	2	-	1	-	-	2	-	-	-	-	-	-	5	7.60
	비율	-	40.0	-	20.0	-	-	40.0	-	-	-	-	-	-	100.0	
신용정보법 50조 2항 5호	수	-	-	-	1	-	-	-	-	-	-	-	-	-	1	6.00
	비율	-	-	-	100	-	-	-	-	-	-	-	-	-	100.0	

(나) 제1안(6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 선고 형량 분포의 고려
 - 기본영역에 전체 선고사례의 76.5% 포섭
 - 최빈값(6월) 기본영역 내 포섭
- 기본영역의 설정
 - 1-1과 법정형이 같으므로 동일한 형량범위를 상정하고 조정 필요성을 검토함
 - 1-1에서 조정할 필요성 ×, 2-1보다 소폭 상향(∵ 법정형 차이)만으로 충분
 - 1-1과 평균형량 유의미한 차이 없음[1-1: 7.87월, 2-2: 6.00-8.17월]
 - 2-1과도 평균형량 유의미한 차이 없음[2-1: 6.45-8.82월]
 - 다양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 신축성 있는 양형이 가능하도록 형량범위 폭(1년)을 다소 넓게 설정
- 감경영역과 가중영역은 기본영역과 중첩범위 고려하여 정함

(다) 제2안(1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 가중
 - 가중구간의 상한 상향 필요
 - 조직적, 범죄이용 목적의 범행을 위한 경우 엄벌 필요성 있음

(라) 제3안(4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제2안에서 서술식 기준을 삭제한 안

(3) 제3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 ⇨ 견해 대립

유형	명칭	해당법조	법정형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10년 이하
	통신비밀 침해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1년 이상 10년 이하

(가) 선고 형량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8	10	12	14	16	18	24	30	36		
개인정보보호법 70조 2호	수	-	2	-	5	4	3	2	1	1	2	1	1	1	23	12.17
	비율	-	8.7	-	21.7	17.4	13.0	8.7	4.3	4.3	8.7	4.3	4.3	4.3	100.0	
신용정보법 50조 1항	수	-	1	-	1	-	-	-	-	-	-	-	-	-	2	5.00
	비율	-	50.0	-	50.0	-	-	-	-	-	-	-	-	-	100.0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1호	수	-	-	-	77	25	11	12	-	-	1	1	-	-	127	7.54
	비율	-	-	-	60.6	19.7	8.7	9.4	-	-	0.8	0.8	-	-	100.0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2호	수	-	-	-	18	2	1	5	-	-	2	-	-	-	28	8.21
	비율	-	-	-	64.3	7.1	3.6	17.9	-	-	7.1	-	-	-	100.0	

(나) 제1안(6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6월 - 1년4월	8월 - 2년	1년6월 - 4년

▣ 법정형 동일·유사 범죄 권고 형량 고려

- 무고범죄(10년 ↓)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1년 ↑ 10년 ↓)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일반물건방화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10년 ↓ + 1년 ↑ 10년 ↓)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공익건조물파괴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 선고 형량 분포의 고려

- 기본영역에 전체 선고사례 중 42.2% 포섭
- 많은 사례를 포섭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 선고사례가 6월임에 기인
- 법정형 동일·유사 범죄 권고 형량에 비추어 기본영역 하한 6월 이하 곤란

▣ 기본영역의 설정

- 1-2(법정형 7년 ↓)와 평균형량 유의미한 차이 없음[1-2: 8.72월, 2-3: 5.00-12.17월]
- 하한을 6월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와 최대한 가깝게 설정할 필요 有 ⇨ 기본영역 하한 8월 설정
 -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선고사례가 6월에 해당함
 -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60.6%, 같은 항 제2호의 64.3%가 6월 선고 사안

- 6월 선고 사안 중 상당수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해 차량 등에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 ⇨ 규범적으로 기본영역 하한을 높일 필요성 ↓
- 분석대상 판결 이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안 선고유예도 多
- 2014. 1. 1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정형 10년 이하 → 1년 이상 10년 이하(제안경위¹⁴⁾는 다음과 같음) ⇨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 방지하기 위함

2013년 12월 31일 제321회 국회(임시회)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위 개정의도와 달리 실무는 주로 개인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가 문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6월 선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
-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 등 중한 사안은 가중영역을 규범적으로 높여 해결함이 타당함
 - 다양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 신축성 있는 양형이 가능하도록 형량 범위 폭(1년 4월)을 다소 넓게 설정
- ▣ 감경영역은 기본영역과 중첩범위 고려하여 정함
- ▣ 가중영역은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높게 설정함

(다) 제2안(1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6월 - 1년4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 가중

14) 의안번호 1908955, 제안일자 2014. 1. 1.

- 법정형 상한(10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구간의 상한을 1-2 유형(7년)과 동일하게 설정함은 부당하므로, 전체적인 상향 필요
- 동일 법정형으로 참고한 범죄(무고, 일반물건방화, 손괴)와 달리 본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범죄이므로,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 있음
- 조직적·범죄이용 목적의 경우 서술식으로 추가하여 형량 가중 기준 마련

(라) 제3안(4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6월 - 1년4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 제2안에서 서술식 기준을 삭제한 안

다. 예비적 논의: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1) 제1유형(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 견해 일치

(가) 선고 형량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3호	수	1	1	25	1	41	14	4	3	-	-	-	-	-	90	6.04
	비율	1.1	1.1	27.8	1.1	45.6	15.6	4.4	3.3	-	-	-	-	-	100.0	

(나) 방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 6월	4월 - 8월	6월 - 1년

▣ 법정형 동일 범죄 권고 형량 고려

- 도주·범인은닉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도주	- 6월	4월 - 8월	6월 - 1년

- 명예훼손범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모욕	- 4월	2월 - 8월	4월 - 1년

▣ 선고 형량 분포의 고려

- 기본영역에 전체 선고사례의 약 90% 포섭
- 최빈값(6월) 기본영역 내 포섭

(2) 제2유형(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용통 등) ⇨ 견해 일치

유형	명칭	해당법조	법정형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용통 등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3년 이하

(가) 선고 형량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정보통신망법 72조 1항 4호의나	수	-	-	3	-	10	8	3	3	-	-	-	3	3	33	9.94
	비율	-	-	9.1	-	30.3	24.2	9.1	9.1	-	-	-	9.1	9.1	100.0	

(나) 방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용통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 법정형이 동일한 2-1 범죄와 동일하게 형량범위 설정(제1안)
- 형량범위 조정할만한 특별한 사정 ×

5. 다수의견에 따른 양형기준 설정안

가. 권고 형량범위

01¹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5년 ↓
2	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	4월 - 1년	6월 - 2년	1년2월 - 3년6월	7년 ↓

02¹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3년 ↓
2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5년 ↓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6월 - 1년4월	8월 - 2년	1년6월 - 4년	1년 ↑ 10년 ↓ + 10년 ↓

나. 유형의 정의

[유형의 정의]

가. 제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나. 제2유형(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02¹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가. 제1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나. 제2유형(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의 업무범위 초과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영업양수자의 개인정보 이용제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각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7호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8호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호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치정보법 제39조 제4호

다. 제3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가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IV. 향후 일정

- 일시: 2022. 10. 11. (화) 오후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방안 검토(설정범위, 유형분류)